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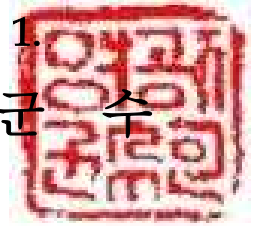


## 도로명주소 부여·폐지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·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, 제25조,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. 5. 1.

영 광 군 수



### ○ 도로명주소(부여·폐지) 내용

종전(지번)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 (효력발생일)	도로명주소 부여·폐지 사유
별	지	기	재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(☎061-350-5777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 시스템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### 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.

### 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### 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# 건물번호 부여 내역

종전(지번)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 시 일	도로명주소 부여 사유
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월평리 36	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와룡로 105-46	23. 5. 1.	건물신축
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우곡리 204	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함영로1길 9	23. 5. 1.	건물신축
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방마리 산42-5	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방마로 149	23. 5. 1.	주민편의
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 동근리 457	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 천년로6길 28-37	23. 5. 1.	건물신축
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484-3	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불갑사로 287-25	23. 5. 1.	건물신축
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44-8	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천년로 81-24	23. 5. 1.	건물신축
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쌍운리 34-4	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강향로1길 70	23. 5. 1.	주민편의
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학정리 503-3	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1길 58	23. 5. 1.	건물신축
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 영양리 667	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 묘량로3길 28-1	23. 5. 1.	건물신축
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구수리 137	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해안로 1702	23. 5. 1.	건물신축
전라남도 영광군 군서면 만금리 564-12	전라남도 영광군 군서면 관산로1길 61-32	23. 5. 1.	건물신축
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아월리 163-294	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칠산로8길 87-25	23. 5. 1.	건물신축
전라남도 영광군 군서면 마을리 161-1, 160-13	전라남도 영광군 군서면 군서로 62	23. 5. 1.	주민편의
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용성리 876-2	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영광로2길 193	23. 5. 1.	건물신축
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학정리 672-30	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1-20	23. 5. 1.	건물신축
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천정리 560-1	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성지로8길 71-57	23. 5. 1.	건물신축
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 329	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하사길5길 106-1	23. 5. 1.	건물신축

# 농어촌도로 노선지정(변경)에 관한 공고

『농어촌도로정비법』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(변경)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3년 5월 1일

영 광 군



## 1. 농어촌도로 노선지정(변경) 내용

읍 면	도로의 종류	노선명	노선번호	도로구간		총연장	주요경과지	개발계획		지정(폐지·변경) 사유
				기점	종점			도로너비(m)	포장너비(m)	
영광읍	농어촌도로(농도)	도학선	영광307호선	영광읍도동리114	영광읍학정리145-1	530m	도동리	6.0	6.0	농어촌도로영광307호선(학정)개설공사

2. 사업명 : 농어촌도로 영광307호선(학정) 개설공사

3. 사업기간 : 2021. 12. 27. ~ 2023. 12. 31.

4. 사업시행자

○ 주소 :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

○ 성명 : 영광군수(건설과)

5. 설계도서, 자금계획 등 열람기간 및 장소

○ 열람기간 : 2023. 5. 1. ~ 2023. 5. 15. (15일간)

○ 열람장소 : 영광군 건설과(도로팀)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: 붙임조서

7.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: 붙임(게재생략)

#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

연 번	읍면	리	지번	면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소유자		이해관계인		비고
		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
계				10,662	8,770.7					
1	영광	학정	754-8	645.0	243.1	국토교통부				
2	영광	학정	753-10	262.0	262.0	국토교통부				
3	영광	학정	산23-13	224.0	209.4	국토교통부				
4	영광	학정	753-13	197.0	197.0	영광군				
5	영광	학정	산23-2	119.0	119.0	영광군				
6	영광	학정	753-3	812.0	239.0	국토교통부				
7	영광	학정	산221	1,100.0	231.2	국토교통부				
8	영광	학정	752-7	491.0	491.0	영광군				
9	영광	학정	752-9	1,014.0	1,014.0	영광군				
10	영광	학정	752-6	910.0	910.0	영광군				
11	영광	학정	752-8	1,041.0	1,041.0	구*우	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***_*			
						구*우	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***_*			
12	영광	학정	749-4	430.0	397.0	영광군				
13	영광	학정	419-3	3,077.0	3,077.0	영광군				
14	영광	학정	419	340.0	340.0	영광군				

# 「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4월 28일

## 영 광 군 수

1. 조 례 명 :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-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 규정 정비
- 영광사랑상품권 할인구매의 한도에 관한 사항 일부 정비
-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근거 확보

3. 주요내용

가. 지역화폐의 자금관리에 관한 조항 신설(안 제3조의2 신설)

나. 영광사랑상품권 할인구매 한도 조정(안 제17조)

- (현행) 1인당 할인구매 한도 월 50만 원
- (개정) 1인당 할인구매 한도 월 70만 원

다. 부정유통 예방을 위한 신고포상제 근거 마련(안 제21조제2항, 제3항)

- 상품권으로 지급하며, 지급한도는 1건당 10만원, 동일신고자 연 50만원까지

4. 입법예고 기간: 2023. 4. 28. ~ 2023. 5. 17.(20일간)

## 5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수(참조: 일자리경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일자리경제과(전화 061-350-545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전화

1) 전자우편(e-mail) : [wogur5616@korea.kr](mailto:wogur5616@korea.kr)

2) 주소: 전남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 2길 61,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

3) 전화: 061-350-5452, FAX: 350-5465

6.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: 붙임





##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상품권의 자금관리 등) ① 군수는 사용자가 영광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,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영광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영광사랑상품권을 발행·판매·환전하기 위한 자금(이하“상품권운영자금”이라 한다)을 보관·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군 금고에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영광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영광군 재정으로 귀속하고, 다음연도 영광사랑상품권 발행사업이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액을 확인하게 하는 등 영광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법 제7조제4항에**”을 “**법 제7조제5항에**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**50만원을**”을 “**70만원을**”로 한다.

제17조제4항 중 “**할인율을**”을 “**할인구매 한도 및 할인율을**”로 한다.

제21조의 제목 “(**유통질서 확립**)”을 “(**유통질서 확립 및 신고포상제**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군수는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의 가맹점 취소 사유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자 및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다만 신고내용이 위반 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으로 지급하며, 그 지급한도는 1건당 10만원으로 하되, 동일 신고자에게 연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신 설>	<u>제3조의2(상품권의 자금관리) ①</u> <u>군수는 사용자가 영광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,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영광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영광사랑상품권을 발행·판매·환전하기 위한 자금(이하 “상품</u>

제10조(가맹점 등록 및 관리)

① ~ ⑤ (생략)

⑥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 ~ 3 (생략)

제17조(할인 및 수수료) ① 군수는 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.

다만, 상품권 할인가매는 개인의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

권운영자금” 이라 한다)을 보관·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군 금고에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영광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영광군 재정으로 귀속하고, 다음연도 영광사랑상품권 발행사업이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운영자금의 변동 내역 및 잔액을 확인하게 하는 등 영광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0조(가맹점 등록 및 관리)

①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법 제7조제5항에-----  
-----.

1 ~ 3 (생략)

제17조(할인 및 수수료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--- 70만원을 -----

으며, 법인 및 가맹점의 점주인  
경우 할인가매를 적용하지 아니  
할 수 있다.

② ~ ③ (생략)

제17조(할인 및 수수료) ④ 제1항  
에서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  
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 
는 할인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21조(유통질서 확립)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-----  
-----.

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할인 및 수수료) ④-----  
-----  
-----할인가매  
한도 및 할인율을 ----  
-----.

제21조(유통질서 확립 및 신고포상  
제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 
같음)

② 군수는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  
지를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의 가  
맹점 취소 사유 중 각 호의 어느  
하나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  
한 자 및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 
사항을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한  
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 
다만 신고내용이 위반 사실의 직  
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신고자  
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 
다.

③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 
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으로 지  
급하며, 그 지급한도는 1건당 10  
만원으로 하되, 동일 신고자에게  
연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 
않는다.